

# 안산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중 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35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'95. 2.

제출자 : 안산시장

## □ 개정이유

안산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제6조의 지정 기준중 일부를 안산의 지리및 인문적 특성을 최대한 살려 향토의 역사를 심도있게 보호 관리코자 지정 기준을 보완, 개정코자 합니다.

## □ 주요골자

향토유적 지정 기준중 1945년 이전 유적으로 한정한 것을 오래 되지 아니한 건조물이라도 향후 향토유적으로 지정,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조물을 확대 지정코자함

## □ 참고사항

- 개정 근거 : 지방자치법 제15조
- 예산 상황 : 해당없음
- 기타참고사항 : 해당없음

## 안산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(안)

안산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중 "1945년 이전 유적으로서"를 "1945년 이전 유적 및 오래되지 아니한 건조물이라도 향후 향토유적으로 지정,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조물로서"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<p>제6조(지정기준) 향토 유적은 1945년 이전 유적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유적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. 학술적, 예술적,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적</li><li>2. 보호 관리함으로써 향토문화 토속,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유적</li></ol>	<p>제6조(지정기준) 향토 유적은 1945년 이전유적 및 오래되지 아니한 건조물이라도 향토 유적으로 지정,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조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유적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. 학술적, 예술적,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적</li><li>2. 보호 관리함으로써 향토문화 토속,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유적</li></ol>